

전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96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961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가소149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4. 28.

판결선고 2022. 5. 26.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가소149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각 환부 물품들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오로지 피고를 해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참조). 또한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인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2. 9.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환부 받은 물품 중 원고 소유의 18K 30돈 팔찌(이하 ‘이 사건 팔찌’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수령 및 보관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위 팔찌를 수령한 후 원고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팔찌 대금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팔찌를 무상 증여하였거나 혹은 원고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주었을 뿐, 피고에게 보관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 9. 전주교도소 C 교위 소외 D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팔찌를 포함한 환부물품들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팔찌를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팔찌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환부 물품 67개의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물품들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조로 준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고가 원고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환부 물품의 보관을 맡겼다가 보다는 무상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